

2021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2021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2021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2021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농림수산정책자금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현장에서 농림수산 금융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우리원은 2004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설립되어 이듬해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해왔습니다.

매년 검사실시 기관 수를 확대하고, 비대면 검사 등 다양한 검사기법의 개발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의 자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출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 하여 부정수급 등을 사전 예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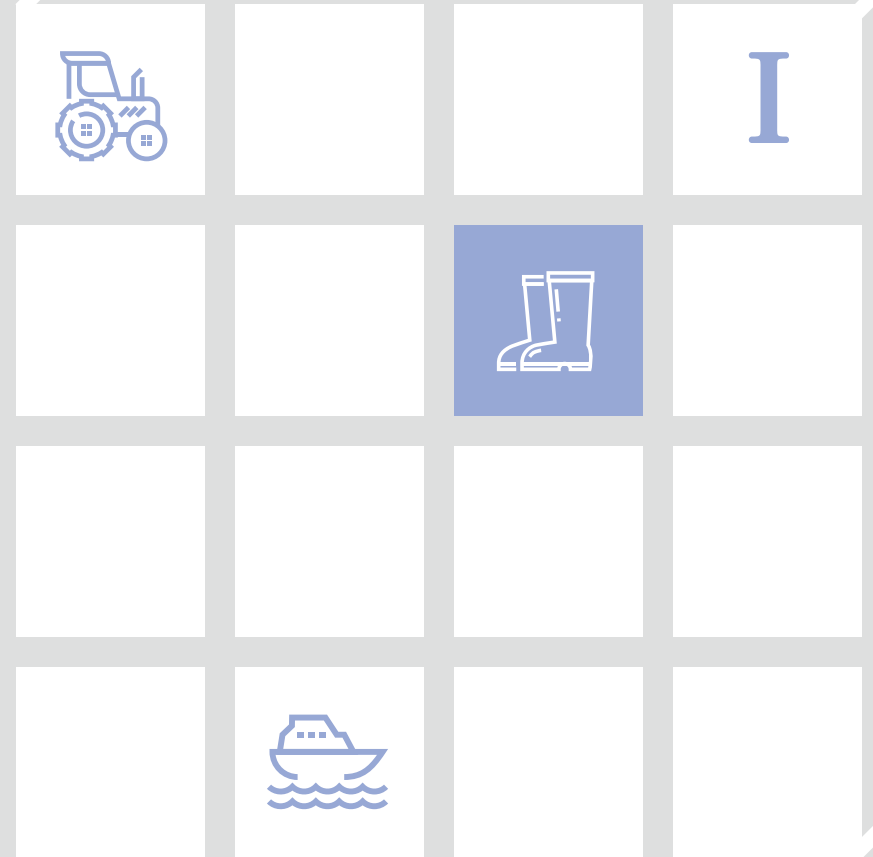
정책자금대출 취급부적정, 부정수급 등 다양한 검사사례의 공유를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민연태

내일을 위한 기관혁신
보다 나은 [농업금융원]



I

검사 개요

- 사업목적 및 사업수행근거
- 검사업무 절차

사업목적 및 사업수행근거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한 검사·관리 강화로
농림수산정책금융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편익 증진과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63조의2 제4항 : 법정업무

(법) 제 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 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위탁업무

(법)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3조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검사업무 절차

1

[대상기관 선정·통보]

분기별 검사 일정 사전통보, 검사 3~4주 전 수검기관의 검사준비 자료에 대해 유선 안내

2

[검사실시]

1) 임점검사

검사반별 2~3명으로 대상기관에 임점하여 3~5일간 검사 실시

-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 대상기관 특성 및 현장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검사반장 면담
- 검사 기간 중, 지적 및 확인사항 등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2) 비대면 검사

대출취급사무소에 임점 하지않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자료 및 데이터를 제출받아 검사 실시

3

[강평·교육, 조치방법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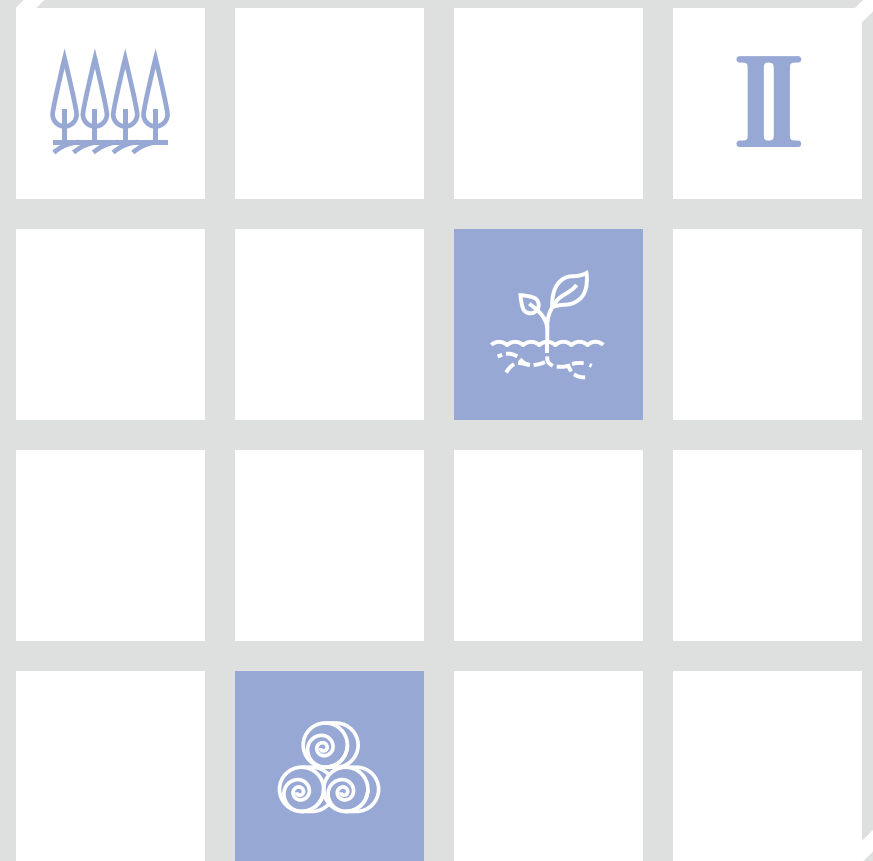
- 검사결과 총평과 함께, 정책자금 집행·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및 지적 사례 공유 등 담당자 교육 실시
- 이차보전자금의 경우 이차보전 제외 전산등록 관련 절차를, 농특자금 등 정부지원자금의 경우 대여금 반납 관련 절차 안내
- 사업시행기관이 행정기관인 경우 해당 사실 통보 후 회신 내역에 따라 조치되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취급기관인 경우 부정수급·중도회수 전산등록 및 대출금 회수, 채무 인수 절차 등 안내

4

[검사결과 통보·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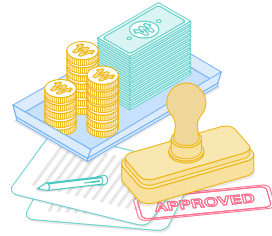
검사결과는 다음 분기 초 통보되며, 대출취급기관은 각 은행 및 중앙회 정책자금 본부부서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농금원은 본부부서에 대한 정기검사 시 조치결과 확인

내일을 위한 기관혁신
보다 나은 [농업금융원]



II 검사 주요사례

- 농 협
- 수 협
- 산림조합
- 대손보전



농업

	검사 지적사항	
취급 부적정	지원제외대상자에게 농업경영희생자금 지원	14
	양축규모를 과대계상하여 농업종합자금 지원	14
	경작면적 과대계상 및 재배작목을 변경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15
	귀농정책자금 지원 시 기지원 정책자금 미차감	16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16
	용자대상 주택 연면적을 초과한 주택에 대하여 자금 지원	17
	재무제표가 없는 농업경영체에게 농업종합자금 지원	17
	여신취급제한자에게 산지유통활성화자금(출하선급금) 지원	18
	유통손실보전자금 집행한도 초과	18
	지원제외대상자에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19
국산원료 점유비 미충족자에게 농산물가공사업자금 지원	19	
사후관리 소홀	지원 부적격자에게 채무인수	20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정책자금 사업계획 이행 부적정	21
	후계농업경영인이 회사·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근무	22
	귀농인이 타산업 분야의 전업적 직업 보유	22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농기계 매도	23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축사 소유권 지분 이전	24
사망, 사업포기로 인한 중도회수 사유발생	24	

수협

취급 부적정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한 대출 지원	26
	지원제외대상자에게 어업경영자금 지원	27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종묘(패) 구입비 초과 취급	27
사후관리 소홀	어업정지 처분자의 영여자금 회수조치 미이행	28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수산업경영인이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	29
	귀어업인이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에서 상근근로자로 근무	30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양식장) 매도	30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어선 매도	31
	사망·사업포기로 인한 중도회수 사유 발생	32

산림조합

취급 부적정	사업실적에 대한 확인 부적정	34
	산림종합자금(산양삼 생산) 용자한도 초과 지원	35
	국내산 원목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 없이 목재 이용·가공시설자금 지원	35
사후관리 소홀	대출금 사후정산 및 회수 불철저	36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 증여	37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임업기계 매도	38
	조경수 사업장 중 일부 필지에 펜션 건축	39
	사망, 사업포기로 인한 중도회수 사유발생	39

대손보전

대손보전 부적정	대손보전금에 대한 구상채권 미회수	42
	소요경영비 심사가 부적정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대손보전금 수령	43
	부적정하게 취급된 대출금에 대한 대손보전 수령	44



검사 주요사례

농협

- 취급부적정
- 사후관리 소홀
-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취급부적정]

01 지원제외대상자에게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본인 소유의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자금 지원

관련 규정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시행지침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하되,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부동산(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 포함, 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로 확인)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02 양축규모를 과대계상하여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신규지원을 위한 1회전 소요운전자금 산출 시 쇠고기 이력 관리시스템 자료를 통해 가축(한우) 사육규모를 확인함에 있어, 생후 6개월 미만 사육두수를 제외해야 함에도 전체 사육두수를 대상으로 용자한도를 산출하여 자금 지원

관련 규정



농협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 제2편(농업종합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의 대출가능금액은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상의 경영면적과 재배작목에 따라 산출된 1회전 소요운전자금에 컨설팅비용, 토지 임차료 등을 합산하고 기운전자금차입금, 경제사업 채권등을 차감한 차감한 금액을 대출가능 운전자금으로 정하고 있고, 축산의 경우 양축규모의 확인은 사업자로부터 가축사육현황 신고·확인서를 제출받아 현장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축사육 규모검증프로그램에 의거 산출된 적용두수 또는 현장 확인 두수를 입력하며, 소의 경우 이력제 자료에 의한 사육두수를 인정하되 한우는 생후 6개월 이상된 것에 한하여 압수는 한우번식으로 수소는 한우비육으로, 젖소숫소(육우)는 전량 젖소비육으로, 낙농은 암소 중 초임우, 건유우·착유우 두수만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03 경작면적 과대계상 및 재배작목을 변경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요경영비 심사 시 객관적 증빙서류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와의 대출상담을 바탕으로 재배작목·경작면적을 심사함에 따라 실제 소요경영비를 초과하여 지원

관련 규정



농협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 제5편(농축산경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은 경종농업 및 과수, 화훼, 특작농가(인삼 제외)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는 소요경영비 심사에 따라 산출된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농가당 잔액 기준 10백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소요경영비는 각 자금에 소요되는 1기작 운전자금으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확인서 등 영농 확인서류에 기재된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지원금액이 6백만원(18년 이전 사업자금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요경영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04 귀농정책자금 지원 시 기지원 정책자금 미차감

농업 창업자금 지원 시 세대당 총 한도에서 기지원 정책자금을 차감해야 함에도 기지원 자금을 차감하지 않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 지원

관련 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사업시행지침

농업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이며, 정부·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기대출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05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에서 농협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대상자를 선정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직업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원제외 대상자에게 대출취급

관련 규정



농업종합자금시행지침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대출대상자에서 제외한다.(2020.02.03. 개정)

06 용자대상 주택 연면적을 초과한 주택에 대하여 자금 지원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제외 주택에 해당됨에도 자금 지원

관련 규정



농촌주택개량자금시행지침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고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다.

07 재무제표가 없는 농업경영체에게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출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 대출금’ 10억원 이상인 농업경영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자금 지원

관련 규정



농업종합자금시행지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의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종합자금대출금 1억원 미만 대출시에는 제외)

08 여신취급제한자에게 산지유통활성화자금(출하선급금) 지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한국 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관리되고 있어 여신취급 제한자에 해당되어 출하선급금을 지원 할 수 없음에도 자금 지원

관련
규정


농협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2절 제7조

조합 및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농협은행, 농협보험)의 연체채권 채무자, 전 조합 및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의 특수채권 채무자 및 보증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 대상자, 여신취급주의대상자로 등록된 자 등은 신규약정, 채무인수, 기간연장, 재약정 등 여신을 취급할 수 없다.

09 유통손실보전자금 집행한도 초과

유통손실보전자금의 연간 지출가능 총액은 전년 말 적립금 잔액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 지원

관련
규정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사업시행지침

유통손실보전자금의 연간 지출가능 총액은 전년 말 적립금 잔액의 30% 이내로 하되, 사업의 손실보전 및 목표가격 보전, 수급안정사업비, 산지작업반 운용비용, 농협경제지주 지시에 의한 출하조절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0 지원제외대상자(병역의무 미이행자)에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지원제외대상자(병역의무 미이행자)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자금 지원

관련
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교육기관에 재학 및 휴학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1 국산원료 점유비 미충족자에게 농산물가공사업자금 지원

농산물가공사업자금의 지원대상은 단순가공업의 경우 국산 농·축·임산물의 원료 점유비가 80% 이상, 식품가공업의 경우 50% 이상인 사업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국산 원료 점유비를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자금 지원

관련
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4절

주원료를 국산 농·축·임산물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생산자단체 주원료 사용 인정 기준은 단순가공업의 경우 국산 농·축·임산물의 원료점유비는 80% 이상이며, 식품가공업의 경우 농·축·임산물의 원료점유비는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후관리 소홀]

01 지원 부적격자에게 채무인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사망함에 따라 당해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였으나, 동 상속인의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지원 부적격자에 해당함에도 채무인수

관련 규정



농업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 제8편 제2장

대출취급기관은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매매, 상속 등 양도에 따른 채무인수 포함) 취급 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징구하여 당해 주택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01 정책자금 사업계획 이행 부적정

사업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근거로 축사 신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축사를 신축하지 않는 등 당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시행 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등은 후계농업경영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02 후계농업경영인이 회사·공공기관 등에 상근직원으로 근무

후계농업인 선정 및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근거로 후계농육성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이 회사의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장 이탈, 회사·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 수령,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후계농업인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 대출이 없는 경우 선정된지 2년 이내(다음년도 12.31일까지)에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로 정하고 있다.

04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농기계 매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당해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 제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제한 또는 정상화(채무인수 등)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3 귀농인이 타산업 분야의 전업적 직업 보유

귀농 농업창업인 선정 및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근거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타 산업분야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귀농 농업창업인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시행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교육기관에 재학 및 휴학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등을 귀농인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로 정하고 있다.



05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축사 소유권 지분 이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증축한 사업자가 대출 지원 이후 당해 시설(축사)의 소유권 지분 50%를 타인에게 이전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당해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 제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제한 또는 정상화(채무인수 등)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06 사망, 사업포기로 인한 중도회수 사유발생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여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됨에도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 제외 등의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 주요사례



수협

- 취급부적정
- 사후관리 소홀
-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취급부적정]

01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한 대출 지원

축제식(재래식)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개량식 양식업에 해당하는 영어자금 소요액으로 심사함에 따라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자금 지원

관련
규정



정책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2절

어업자별 대출한도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실태조사한 “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결과 보고서”의 어업별 소요액에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에서 정한 가구당(업체당) 융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02 지원제외대상자에게 어업경영자금 지원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하고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가공업 소득 포함)의 비중이 70%에 미달하여 어업경영자금 지원 제외대상자임에도 부당하게 자금 지원

관련
규정



정책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1절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다만, 총 소득 중 어업소득(수산물 가공업소득 포함)이 100분의 70이상이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 경영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03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종자(패) 구입비 초과 취급

수산업경영자금을 취급하면서 종자(패) 및 친어 구입비는 실대출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원하여야 함에도,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에 따라 전액 지원하여 적정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자금 지원

관련
규정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독립된 어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중 종자(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 등 운영자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대출금액의 30% 초과할 수 없다.

[사후관리 소홀]

01 어업정지 처분자의 영어자금 회수조치 미이행

영어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6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 포함)을 받았으나 당해 어선과 관련된 대출금 회수 및 일정기간 용자 금지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

수산업법, 어선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 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하거나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한 양식장·어선·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 자금회수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01 수산업경영인이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

사업주관기관의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근거로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수산업경영인이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고 월정 급여 받고 있어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관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

수산업경영인이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어업후계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일기준 2년 이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02 귀어업인이 수산업과 무관한 사업체에서 상근근로자로 근무

사업주관기관의 귀어업인 선정 및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근거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귀어업인이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과 무관한 사업체에서 상근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사업취소 및 용자금 회수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관기관 통보 및 대출금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

귀어업인이 용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03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양식장) 매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내수면 양식(동자개)을 위한 양식종묘, 자재, 시설보수를 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설치한 양식장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당해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 제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제한 또는 정상화(채무인수 등)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수산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대여금의 경우 수협은행 등은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04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어선 매도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어선을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어선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당해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 제외,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제한 또는 정상화(채무인수 등)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수산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대여금의 경우 수협은행 등은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05 사망·사업포기로 인한 중도회수 사유 발생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여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됨에도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 등의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대출취급기관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등 정책자금대출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수협은행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대여금의 경우 수협은행 등은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주관기관은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사 주요사례

산림조합

- 취급부적정
- 사후관리 소홀
-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취급부적정]

01 사업실적에 대한 확인 부적정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이행실적 확인 시(사후용자 방식) 관련 규정에서 정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가 아닌 사업자가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의거 사업실적 확인 후 자금 지원

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8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실적이「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02 산림종합자금(산양삼 생산) 용자한도 초과 지원

산양삼 생산자금 지원 시 확인된 사업실적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함에도 총 사업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용자한도를 초과하여 자금 지원

관련 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제2편 제4장

산양삼 생산자금의 경우 용자한도는 사업자 당 1억원, 용자비율은 사업비의 80%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서류(설계서, 견적서 등),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03 국내산 원목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 없이 목재 이용·가공시설자금 지원

목재 이용·가공시설자금 취급 시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국내산 원목을 연간 8,000㎡ 이상 사용자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국내산 사용실적이 전무한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

관련 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시행지침 제2편 제9장

목재 이용·가공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당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목재가공업체 중 국산재 원목을 연간 8,000㎡이상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산림조합장은 원자재 출납대장 사본을 제출받고 국산재 원목 사용량(전년도 구입 실적)이 추가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소홀]

01 대출금 사후정산 및 회수 불철저

정책자금 지원 후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검증 및 정산 시(사전융자 방식)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한 금액이 규정에서 정한 금액(3천만원)을 초과함에도 개인간 거래 영수증에 의거 사업비 검증·정산 실시

관련 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제12조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연도별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

01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 증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조성하였으나, 당해 임도가 설치된 임야를 타인에게 증여하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및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 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임업기계 매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임업기계를 구입하였으나 당해 임업기계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및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03 조경수 사업장 중 일부 필지에 펜션 건축

조경수 생산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당초 자금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대출금 회수 및 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04 사망, 사업포기로 인한 중도회수 사유발생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포기하여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됨에도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 등의 조치 미이행

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 주요사례

대손보전

- 대손보전 부적정



[대손보전 부적정]

01 대손보전금에 대한 구상채권 미회수

기금 관리기관(농협은행)에 부실 대출금에 대한 대손보전을 신청하여 대손보전금을 수령하고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탁받았으나, 사업자의 탈퇴지분을 조합의 대출채권 및 대손보전 구상채권과 상계를 통해 채권 회수(기금에 납부 등)에 우선 총당하여야 함에도 상계 등 채권의 회수조치 없이 가수금 계정에 입금 후 탈퇴지분 전액을 자체수익 처리하여 구상권 행사 미이행

관련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정규정 제11조, 제16조

제11조(대손보전 대상): 기금의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정책자금 중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자금 중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담보권 행사 등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

제16조(구상권):

- ① 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할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 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해당 금융기관이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자산관리회사 또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관련 규정



- ③ 구상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02 소요경영비 심사가 부적정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대손보전금 수령

농축산경영자금 소요경영비 심사 시 객관적 증빙서류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와의 대출상담을 바탕으로 재배작목·경작면적을 입력함에 따라 실제 소요경영비를 초과하여 지원하였으며, 추후 동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대손보전을 신청하여 대손보전금을 부당하게 수령

관련 규정



농협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 제5편(농축산경영자금)

여신관련 제 규정상 대출금지 대상("연체"정보 등록 등)에 해당되는 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할 수 없으나, 연체채권보유자의 농축산경영자금 대한대출의 경우 예외취급 가능(이후 당해 자금년도 중에는 추가 신규증액 대출 제한)하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정규정 제13조

- ③ 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03 부적정하게 취급된 대출금에 대한 대손보전 수령

연체중인 농축산경영자금 대환대출시 대출잔액 범위내에서 대환하여야 함에도 증액하여 대환취급하고, 이후 동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대손보전 신청 및 대손보전금 수령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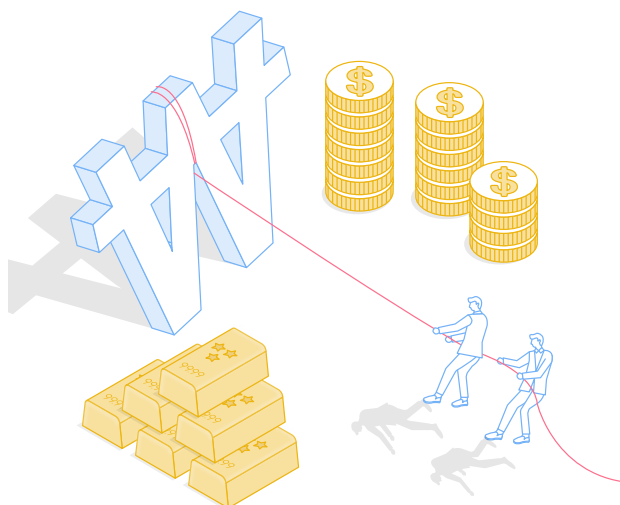


농협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 제5편(농축산경영자금)

소요경영비는 각 자금에 소요되는 1기작 운전자금으로 농지원부, 임대차계약 확인서 등 영농 확인서류에 기재된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지원금액이 6백만원('18년 이전 사업자금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요경영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3조

- ③ 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농업교육포털에서 농업정책자금
온라인교육콘텐츠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021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사례집**

발행일 2021. 11월

인쇄일 2021. 11월

발행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Tel. 02.3775.6700

디자인 (주)그린주의 Tel. 1544-0725

※ 본 사례집은 발간년도의 사업시행지침 및
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발간되었습니다.